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15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이종욱·송언석·이성권

성일종 • 이인선 • 이종배

박수민 • 박수영 • 구자근

최은석 • 박대출 • 김예지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는 年 200조원을 넘어 GDP의 9.3%를 차지하고, 참가업체도 57만여 개가 될 정도로 크게 성장함. 최근 공공조달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의획득을 넘어, 산업정책, 기술혁신, 취약계층 지원, 공급망 위기대응 등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EU, 영국, 미국 등 주요국도 공공조달을 통해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에 관한 일반법에 전략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공공조달의 규모 증가와 전략적 활용의 보편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기술혁신, 기후·환경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조달법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에 관한 것이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법」 등 조달청의 사업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조달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전략적 역할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개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의 특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공공조달의 기본원칙과 책무, 전략적 운용 및 정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한 국가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영과 정책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 적시·최적 조달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노력하고, 경쟁·공정·투명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산업육성·기술혁신,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공공조달 정책의 중요 방향,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둠(안 제8조).
-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조달에 관한 종합적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9조).
-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양한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안 제10조).
- 사.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보호·육성, 환경과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취약·소외계층 지원,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 아.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정부와 조달 분야 다자 및 양자협력,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전시회 등의 개최 등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의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기존 공공조달의 특례와 중복성, 경제적·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소관 공공조달의 특례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차.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조달 통계를 공공조달기관과 공유할 수 있고, 공공조달기관의 공공조달 업무 역량개발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공공조달의 특례 성과평가 등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또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조달청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조달의 기본원칙과 책무, 전략적 운용 및 정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한 국가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조달"이란 공공조달기관이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공공조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 단
 -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 · 출연 기관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 3. "공공조달의 특례"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가. 법령에서 공공조달기관의 장이 특정 물품·용역·공사를 의무 적 또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
 - 나. 법령에 따른 공공조달기관의 평가에 특정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
 - 다. 입찰절차에서 신인도 평가 항목으로 배정되어 있는 제도
 - 라. 그 밖에 공공조달의 절차상 의무 또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조달의 전략적 운영과 정책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조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조달을 총 괄·조정하며 그 운용의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조달에 관한 정책 수립, 운영 및 정책기반 조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공공조달 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조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공공조달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워칙

- 제5조(공공조달 기본원칙)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 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하 "기본원칙"이라 한 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적시에 최적의 조달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 율적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경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계약에 참가하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3. 건전한 산업육성 및 기술혁신,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여야 한다.
 - 4.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운용의 효과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조달의 계약 절차 등) ① 공공조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공 공조달의 계약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따른다.
- ②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계약 절차와 다르게 특례를 신설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특례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공공조달의 전자적 수단 등) 공공조달의 전자적 계약 수단, 전자입찰 절차 및 방법, 전자조달시스템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장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등

- 제8조(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공공조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공공조달 정책의 중요 방향에 관한 사항
 - 2.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 3. 제5조에 따른 공공조달 기본원칙의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6조에 따른 특례 신설의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 결과
- 5. 제9조에 따른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6.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7. 제15조에 따른 공공조달의 특례 신설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8.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공공조달의 정책기반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
- 9.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 2. 공공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사회·환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심의로 본다.

-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9조(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조달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계획 (이하 "공공조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1. 공공조달의 목표 및 정책 방향
 - 2. 공공조달의 추진 성과 및 평가
 - 3.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방안
 - 4. 공공조달의 사업 추진 방향
 - 5. 우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추진 방향
 - 6.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

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⑤ 그 밖에 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양한 국가정 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하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추 진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요청에 성실히 따 라야 한다.
- 제11조(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 ①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기술혁신과 국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혁신적 제품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환경적 책임 고려) ①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 보호 육성

- 2. 환경과 탄소중립 · 기후위기 대응
- 3. 취약 · 소외계층 지원
- 4. 지역 균형발전 지원
- 5. 고용 촉진
- 6.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 7. 공중보건 · 공공안전
- 8. 인구정책
- 9. 그 밖에 공공조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적 가치를 공공조달 정책에 반영할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환경적 가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공서비스의 질
- 2. 재정 운용의 효율성
- 3. 사회·환경 및 연관 산업의 조성·발전에 미치는 영향
- 4. 그 밖에 공공조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 ①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을 함에 있어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등의 원활한 획득·유통(비축을 포함한다)·제공을 통하여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국민의생활에 필수적인 물자의 긴급하고 신속한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제6

조제1항의 공공조달 계약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소화하는 한시 적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1. 전쟁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상황
- 2.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
- 3. 국내외 공급망의 심각한 교란
- 4. 그 밖에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 제14조(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 내 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을 조성할 수 있다.
 - ②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조달 시장의 자유화와 개방, 비차별, 투명성, 상호주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1. 외국정부와 조달 분야 다자 및 양자협력
 - 2. 공공조달 혁신 사례 공유를 위한 인력 ㆍ정보의 교류
 - 3.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전시회 등의 개 최
 - 4.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에 관한 조사・연구

제4장 공공조달의 특례 관리

- 제15조(공공조달의 특례 신설·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2조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의 특례를 신설할 수 있다. 다만, 공 공조달의 특례를 신설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이하 "적격성 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신설 · 변경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 2. 기존 공공조달의 특례 또는 정부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 3. 정책대상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 사회적 영향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적격성 검토 결과(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한정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 적격성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적격성 검토(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한정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공조달의 특례 신설·변경 기준, 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공공조달의 특례 성과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조달의 특례(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영 실적 및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결과(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조달의 특례에 따른 정책목표
- 2. 공공조달의 특례에 따른 정책목표 대비 실적
- 3. 공공조달의 특례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 및 실적
- 4. 공공조달의 특례에 따른 우선구매비율의 적정성
- 5. 공공조달의 특례 시스템·통계·연구·교육 등 관리체계 개선내용 및 실적
- 6. 그 밖에 공공조달의 특례 관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조달의 특례에 관한 효율적인 운용과 성과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조달의 특례에 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공공조달의 특례에 관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공조달의 정책기반 조성

- 제17조(공공조달 통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조달통계 결과를 제9조에 따른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과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조달 통계를 공공조달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조달 통계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공공조달 교육훈련) ①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역 량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기관의 공공조달 업무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조달 정책의 총괄·조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 2. 공공조달의 특례 성과평가, 신설 및 변경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 연구
 - 3.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을 위한 조사 연구
 - 4. 그 밖에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의뢰한 조사 연

구 · 심사 · 평가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조(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공공조달 전략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조달정책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본다.